

자본시장에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

고 세 훈*

목 차

- | | |
|---|--|
| I. 서론 | 2.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및 배상책임부담 사
이의 불공정성 |
| II. 자본시장에서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 회계감사의 부실화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문제 |
| 1. 자본시장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 기업의 감사보수비용 증가 |
| 2. 외감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IV.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 3. 법률규정 상호관계 | 1.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제3자의 범위 제한 |
| III.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의 필요성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비례책임제의 도입 |
| 1. 외부감사의 목적 및 한계 | V. 결론 |

I. 서론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및 이들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인 기업과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자본시장에 관여하게 되지만 그 직무가 기업의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¹⁾ 또한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1) 이성우, “자본시장 회계정보전달자로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4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30면.

이루어지는 가장 넓은 의미의 자본시장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전달자로서, 기업과 사적인 법률관계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전문가이다.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의 공인회계사 혹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외부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사의 현행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제3자의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피감사회사 등과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이 공인회계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남게 되고,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와 상관없이 감사인이 배상 책임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불합리성이 회계감사의 부실화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설립된 법률이 도리어 ‘투자자에 대한 부실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법상의 공인회계사 혹은 외감법상에 규정된 외부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사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과 공인회계사의 과실에 상응하는 비례책임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성우, 앞의 논문, 330면.

Ⅱ. 자본시장에서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인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Gatekeeper³⁾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감사계약의 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⁴⁾ 따라서 감사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고서상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시되면 투자자 등이 이를 신뢰하고 이용함으로써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⁵⁾

1. 자본시장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법적 성질

자본시장에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공인회계사와 외부감사계약 혹은 기타 비감사계약을 맺은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하며, 제3자는 주로 그 회사에 대한 투자자나 채권자가 될 것이고, 공인회계사가 제3자와 달리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법정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3) Gatekeeper는 투자자들에게 검증(Verify)과 공인(Certify)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성중개인(Reputational Intermediary)이라고 정의된다. 고객회사가 행하는 공시의 내용에 대해 검증하거나 평가하고, 공시를 준비하며, 투자자에게 서비스하는 전문직업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이창우·고종권·전규안,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6, 7면.

5) 이창우·고종권·전규안, 위의 논문, 7면.

나. 책임의 내용

먼저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신고서⁶⁾와 투자설명서⁷⁾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사업보고서등⁸⁾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인회계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외감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내용

6) 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7)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8)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포함한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외감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 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감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고, 감사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7조 제5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 감사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

증권거래에 있어서 발행인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발행인의 정확한 재무 상태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의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⁹⁾

나. 외감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¹⁰⁾에서는 외감법

9)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665면.

10) 외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되고, 외감법은 그 입법목적이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및 감사의 범위에 관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와 '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있고(제2조), 그러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외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같은 법 제3조의 감사인에 한정된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같은 법 제3조의 감사인에 한정된다고 한다. 동 사건에서 당시 법령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주식회사 엔트의 경우 당시 자산총액이 59억 원 정도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위 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회계법인이 외감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서류 중에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분기·반기검토보고서와 추정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가증권평가기관으로 작성하는 유가증권평가서 등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3. 법률규정 상호관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외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투자자가 부실감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외감법 제17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중첩 적용 문제가 생기는데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는 외감법 제17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¹¹⁾

11) 강현중,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 2006, 25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투자자가 감사보고서 외에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신뢰하여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외감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고, 자본시장법 제125조(발행시장)와 제162조(유통시장)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한 부실감사로 인하여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사실 등이 있고, 이 서류들이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었을 경우에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하여,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가 정기공시에 제출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실감사를 이유로 한 외감법 제17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경합하여 가능한 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는 없으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제170조, 외감법 제17조의 요건사실과 제척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권경합으로 보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할 것이다.

Ⅲ.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의 필요성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외부감사의 목적 및 한계

가. 외부감사의 목적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2005년 7월 20일 제정하고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회계감사기준 100.3).

나. 외부감사의 한계

회계감사의 고유한 한계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 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회계감사기준 100.4.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회계감사기준 100.4.2).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에는 일반적으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고유한 한계와 더불어 시사의 성격과 감사의 고유한 한계로 인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¹²⁾

즉 현실세계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시장 역시 불완전하고도 미완성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¹³⁾ 또한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열람·등사·제출받은 회계에 관한 장부, 서류, 자료 등의 문서가 진실하다고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의한 내부공모, 위조 또는 변조 등 문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조사·판단은 재무제표 감사의 범위가 아니다(회계감사기준 100.4.4). 그러므로 감사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회계감사에는 감사인의 감사 실패라는 사실 자체를 감사인에 대한 책임귀속의 근거

12) 이준봉,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비교사법』 제12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267면

13) 이준봉, 위의 논문, 267면.

로 삼거나 사실상 감사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그 책임의 범위를 연대책임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가 결합될 경우, 모든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한다는 행위가 감사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¹⁴⁾

2.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 및 배상책임부담 사이의 불공정성¹⁵⁾

감사인의 경우 회사의 외부자로서 회사가 작성한 회계서류를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실한 회계서류의 작성주체인 이사와 단순히 부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의 책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내부자 및 외부자, 전문가 및 비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 및 책임 정도가 다양하다. 더구나, 외감법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인 원고가 제한되지 않고 있어, 회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회사채권자 등이, 추후에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감사인을 상대로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단 1%의 과실만 있는 자가 변제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의 손해배상을 추궁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감사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회사나 이사에 대해서 구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부분 회사가 무자력한 상태에서 자력이 있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서 회계법인으로서는 자신의 과실에 비하여 너무 큰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14) 이준봉, 앞의 논문, 267면.

15) 이준봉, 위의 논문, 273-274면.

3. 회계감사의 부실화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문제

다른 전문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서 회계감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회계감사인인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적절한 수의 진입이 요구된다.¹⁶⁾ 더욱이 연대책임제는 피고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부당한 화해에 쉽게 응하도록 하는 유인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협소송(Strike Suit)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¹⁷⁾

감사인의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능한 공인회계사들은 위험이 큰 회계감사인직을 택하기 보다는 감사의견을 주지 않아도 되는 회계·경영컨설팅이나 자문업무 등의 관련서비스를 택하게 될 것이고, 반대효과로서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인직을 수행하게 되어 회계감사의 전체적인 품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는 투자자들의 정보이용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경험과 명망이 있는 회계법인등이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사를 꺼리는 경우, 당해 기업은 감사인을 상대로 의견구매(Opinion Shopping)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자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¹⁸⁾.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였지만, 감사인의 과중한 책임은 경험 있고 명망 있는 회계법인 등이 감사를 회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를 감사인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회계감사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¹⁹⁾

16) 권재열,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을 위한 시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268면.

17) 안수현, “증권집단소송제도 운영론-비례책임제도(proportionate liability)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8집,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73면.

18) 이준봉, 앞의 논문, 275-276면.

19) 이준봉, 위의 논문, 276면.

이렇게 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4. 기업의 감사보수비용 증가

감사인인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감사인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회계법인 등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중복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인 조직내부의 자체점검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감사인력과 감사비용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다.²⁰⁾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된다고 하여도 보험료는 그대로 감사보수에 반영되어 기업의 감사보수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²¹⁾ 감사인의 막대한 소송위험이 반영되어 감사보수를 적정화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감사비용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²²⁾

Ⅳ.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현행 공인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손실보전 및 일정한 손해위험의 공평한 분배라는 손해배상법의 큰 틀 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20) 이창우·고종권·전규안, 앞의 논문, 12면.

21) 1999년 감사보수규정의 폐지로 감사보수가 자율화된 이후 감사수입을 위한 경쟁의 격화로 감사수입료가 적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미국의 약 20%, 일본의 약 25%,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는 대만에 비해서 약 30~40%에 지나지 않는다(이창우·고종권·전규안, 위의 논문, 56면).

22) 이창우·고종권·전규안, 위의 논문, 12면.

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i)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제3자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안과 ii) 공인회계사와 대상회사 간의 비례책임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제3자의 범위 제한

가. 문제의 제기

증권관련 소송에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대법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은 감사인의 i)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고 일반에 공시되기 때문에 그 3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²³⁾으로 판단되며, ii) 감사보고서 이외의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3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비교법적인 검토 - 미국의 경우²⁴⁾

미국에서 부실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된 경우에 이를 작성한 회계감사인이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각 주의 판례법은 아래의 네 가지의 기준으로 발전하여 왔다. 대체적인

2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24)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경우'는 최승재,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와 공모주 투자자의 손해", 한국증권법학회, 2010. 3. 27. 발표자료, 12면 이하.

미국 판례의 경향은 처음에는 제3자가 회계감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적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차츰 이를 완화하여 제3자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용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지우는 책임 확대의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이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예견 가능한 이용자이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 이론이 가장 넓은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1) 사적관계이론(The Privity Rule)

이 이론은 회계감사인과 계약관계(A Contractual Relationship) 또는 직접적인 관계(Direct Connection)가 존재하여야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 해태에 관하여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회계감사인의 행위가 사기(Frau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 견해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서 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2) 접촉이론(The Contact Rule)

이 이론은 사적관계의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서 제3자와 회계감사인 사이에 어떠한 접촉이 있는 경우 주의의무를 해태한 회계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²⁵⁾

25) 최승재, 앞의 논문, 13면. 이 견해는 사적관계이론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계약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책임에 대하여 중요한 선례인 Ultramares 판결(Ultramares Corporation v. Touche, 174 N.E. 441(1931))에서 카도조 판사는 누구도 무제한적인 책임을 무제한적인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서는 안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책임의 근거는 계약상 관계(privity)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관계(relation ship)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예견된 이용자 이론(The Known User Rule)

이 이론은 만일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제3자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에는 그의 과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제3자의 신뢰가 예견될 수 있다(foreseeable)는 사실만으로는 감사보고서의 부실에 대하여 제3자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제3자의 신뢰는 실제로 예견되었어야 하고(actually foreseen), 단순히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견해는 여전히 제 3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한정하기를 거부하면서 회계법인이 당해 평가서나 의견서를 작성할 당시에 실제로 예견하였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책임도 그 실제로 예견한 수요자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4) 예견 가능한 이용자이론(The foreseeable User Rule)

회계감사인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많은 일정한 집단’ 중에서 특별한 어떤 자가 자신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신뢰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실제 예견한 제3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접근법이다. 이 견해를 따르게 될 때 회계감사인은 자신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감사보고서의 경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에서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따라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유동화자산 편입신청 기업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는 미국의 판례법 상의 예견 가능한 사용자 이론에 따르면 더라도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신용평가는 예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용보증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감사보고서의 이용범위에 대해서는 예견가능한 제3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투자자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감사인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실제로 보았던 그렇지 않았던 구별하지 않고 회계법인인 감사보고서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도록 하였다.²⁶⁾

2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2) 감사보고서 이외의 전문가의 의견인 경우

(가) 감정평가 보고서의 경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은 감정평가업자와 손해를 입은 제3자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나) 공모시 공인회계사의 유가증권 평가의 경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은 비상장회사가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일반 공모를 하는 경우에 비상장회사가 실제 주당 본질가치보다 공모가액을 높게 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주당 본질가치가 부(-)의 가치임에도 공모가액을 이보다 현저히 높게 결정한 후에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이 회사의 주당 본질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신고서에 분석기관이 잘못 평가한 주당 본질가치를 감안하여 주당 공모가액을 정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그 밖에 주당 공모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 판례에서 대법원은 분석기관이 유가증권 평가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평가를 함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당한 평가의견이 유가증권신고서나 청약안내공고 등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또한 유가증권 공모회사가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하여 분석기관의 유가증권평가결과에 대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동 판례에서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삼일회계법인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서류는 일반인도 공람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 평가서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달리 주식가치의 기초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았고, 비전문가로서는 평가자체가 매우 곤란한 비상장주식의 속성을 반영한다면 일반인들도 수요자라고 예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²⁷⁾

라. 검토

(1)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

27) 최승재, 앞의 논문, 19-20면.

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외감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엄격한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대해서 정하여 대상 회사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아닌 다른 보고서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아닌 다른 의견서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를 넓히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제3자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이외의 의견서나 평가서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공인회계사가 자신의 업무수행 결과로 제공하는 의견의 수준이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감사보고서가 아닌 다른 의견서나 평가서 등은 그 목적이 제한적이고, 의도된 정보이용자가 공공의 다수가 아니라 개별 업무(Engagement)에 따라 특정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의견서나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가 투입하는 시간과 자원의 정도 및 시사(test)의 범위도 감사의견을 제공하는 감사보고서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이다.

위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에서 투자자들의 유가증권 가치평가서를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피고는 유가증권 평가전문기관으로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평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위법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즉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

에 원고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책임 근거규정을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등으로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는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감사보고서가 아닌 다른 비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가 가장 넓은 ‘합리적인 예측가능성’ 범위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권을 가지는 제3자의 범위를 줄인다면 위의 학설에서 제시한 범위 중에서 적어도 실질적인 예측가능성이 있는 제3자, 즉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제3자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에는 그의 과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더욱 타당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비례책임제의 도입

가. 비례책임제의 의의

비례책임제(Proportionate Liability)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이 각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연대책임과 달리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을 수 있는 감사인이 자기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당사자의 과중한 부담을 막고 남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회계감사인의 과실과 이사 또는 감사의 과실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각 관여자의 행위가 손해를 초래했던 정도 및 그 행동의 상대적 비난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 내지 합리적이다.²⁸⁾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28) 권재열, 앞의 논문, 273면.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증권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증권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미국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미국법상 도입되어 있는 비례책임제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제도로 판단된다.²⁹⁾

나. 외국의 입법례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의 귀책비율에 따른 비례 책임을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즉, 미국에서는 1995년 연방 의회가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³⁰⁾을 제정함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증권사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회계법인에 대한 남소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특히 일부의 과실만 있는 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개정에 이른 것이다.

동 개혁법의 비례책임제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³¹⁾

위 PSLRA³²⁾ 이전의 1933년 증권법 제11조(f)는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자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부과하였으나, PSLRA에 의한 비례적 책임에 관하여는 1934년 증권거래법(이하 34년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34년법 제21D조(f)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행위에 관여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29) 이창우·고종권·전규안, 앞의 논문, 15면.

30) 동법은 199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추가 또는 수정하는 조문을 나열하는 식으로 규정한다.

31) PSLRA의 비례책임제에 대한 주요내용은 상당부분 이준봉, 앞의 논문, 278-279면을 참조하였다.

32) 동법은 본래 사외이사의 책임제한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으나 공인회계사나 감사인도 집단소송의 한 당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일괄적인 연대책임을 제외해 줌으로써 소위 ‘비례책임(Proportionate Liability)’을 도입하였다. 단, 피고들이 증권법 위반사실을 알고(knowingly) 관여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연대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34년법 Sec. 21D(f)(2)(A)). 고의로 한 경우가 아니면 비례적 책임이 적용되므로, “reckless”하게 행위한 피고에게도 비례적 책임이 적용된다(34년법 Sec. 21D(f)(10)(B)).

다. 비례책임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

현행법 상의 연대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회계감사는 감사인의 합리적 확신개념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부정이나 오류가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감사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과 부정을 저지른 회사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아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인회계사의 과실에 비례하는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손해배상법의 큰 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감사보수비용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과실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은 또 다른 불합리함을 낳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각 상황에 따라서 정당하고도 공평한 분담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가해자인 공인회계사에게 고의가 있다면 현행법이 예정하는 대로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V. 결론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하는 것이다. 감사인의 합리적 확신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가 없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감사인의 의견은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신뢰의 정도에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회계사의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증권관련 소송에서 거의 모든 입증책임이 공인회계사 혹은 외부감사인에게 전가되는 현행 제도에 하에서 대상기업이 과실이 감사인의 과실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도 일단 연대책임을 물어서 감사인에게 전액 배상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사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책임이 과도하게 되면 회계감사인으로서의 부실할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고, 유능한 회계사들은 회계감사인이 아닌, 감사의견을 주지 않고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회계·경영 컨설팅이나 자문업무 등을 택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부실해져서 자본시장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고 투자자보호에 미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의 과실에 상응하는 정도로 한정해주는 비례책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증권관련 소송의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아닌 서류에 대해서는 소권을 가지는 제3자의 범위를 ‘예견된 이용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의견서나 평가서 등은 그 목적이 제한적이고, 의도된 정보이용자가 공공의 다수가 아니라 개별 업무(Engagement)에 따라 특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제어 : 외부감사,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책임제한, 비례책임제, 위험의 분배,

[Abstract]

Liabilities for Damages of C.P.A. in Capital Markets

Se-Hun Ko*

Certified Public Accounts(CPA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 Act) and CPAs as External Auditors under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EASC Act)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s to any person who suffer damages by trusting and utilizing CPAs' reports. CPAs and attested company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a third-party. This often results excessive financial risk to CPAs because they have to cover the all damages no matter how much CPAs contributed to the losses of the third party.

Provided that CPAs fail to find a small error in financial statements while the attested company intentionally falsify the examined documents to overstate its business outcome; resulting loss of a third party, CPAs should still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ll damages of the third party under the current law. Furthermore, CPAs have to assume the burden to prove their free-of-negligence during their duty in the lawsuit.

All audit report is not designed to guarantee the accurac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by management, but only to attest to the fairness of management's presentation. It is unfair that CPAs should have a such liabilities imposed upon them.

CPAs' great exposure to potential lawsuits will cause competent CPAs to prefer less risky professions such as advisories or consultants than extremely higher risk of auditing professions. Reputable auditing firms will avoid an audit engagement

* J.D. Candidate 2012, Konkuk Law School.

with corporations of high insolvency risk. Corporations will have to pay CPAs the amount commensurate with the extra risks. These would lead poor-quality-audit, less reliable report, and more expensive to corporations.

This study suggests two approaches to limit CPAs' liabilities; one is adapting proportionate liability and the other is permitting a lawsuit against CPAs only to certain parties.

Under the proportionate liability,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Korean civil law principles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the torts, CPAs will be responsible only for their share of any loss incurred. Their respective portion of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as is done with respect to contribution proceedings.

Korean Supreme Court expands auditors liability to the foreseeable parties. However, this ruling should only be applied to the liabilities of CPAs as an auditor; should not be applied to CPAs who performed non-services such as preparation of registration statements, review services etc. The purpose of audit service is to provide a reasonable assurance by rendering positive form of expression while that of review service(non-audit service) is only give a limited assurance with negative form of expression. Therefore CPAs liability from their non-audit services should be limited to actually foreseen parties.

Key Words : external audit, external auditor, audit report, limitation of liability, proportionate liability, allocation of risk

